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2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 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재)한국 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대표자 : 권오정)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2022.7.18.	제KC 2017-3호	분류: 11. 조명기기 <table border="1"><thead><tr><th>품목</th><th>세부품목</th></tr></thead><tbody><tr><td>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td><td>⑤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2022.10.1. 시행예정</td></tr></tbody></table>	품목	세부품목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⑤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2022.10.1. 시행예정
품목	세부품목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⑤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 2022.10.1. 시행예정							